

영국의 층간 소음 관련 법령과 적용사례

I. 여는 글

전통시대로부터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류 거주지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도시로 옮겨지게 되었다. 한정된 도시 공간에 인구가 점차 밀집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형태가 생겨났다. 공동주택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그 편의성 외에도 한정된 공간에 많은 가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합한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이웃 간 소음 문제 및 대화 단절과 같이 다양한 문제점들 역시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된 것과 같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다툰 한 법조인의 이웃 차량 훼손 사건¹⁾은 이 문제가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대화나 타협으로만은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 대형 건축물(아파트 포함) 뿐만 아니라 원룸, 고시원,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²⁾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 역시 인구의 도시 밀집 현상이 예외일 수 없으며, 이웃 간 소음문제가 결코 무시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비록 한국의 대도시처럼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지만, 관련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300만 명의 영국인이 이웃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중 3분 1의 영국인은 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³⁾ 이를 볼 때, 영국에서도 이웃 간 소음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듯하

1) 정영석, “이정렬 前판사, 층간소음 다툰 이웃주민 차량 파손 물의”, 「뉴스 한국」(2013, 6월 29일).

2) 김종식, “이강후 의원, 층간소음 해결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 통신」(2013, 7월 22일).

3) Josie Clarke, “Three million people suffer with noisy neighbours”, 「The Independent」(2010년 4월 26일).

다. 따라서 해당 행정기관인 환경-식품-지방행정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이하 Defra)와 환경운동재단(Environment Campaigns: 이하 EnCams)는 지난 2003년부터 이웃 간 소음 분쟁을 줄이고자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EnCams는 소음문제를 반사회행위(Anti-Social Behaviour)의 문제 중 하나로 간주하고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영국의 이웃 간 소음(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포함) 관련 법안으로 반사회행위법(Anti-Social Behaviour Act 2003)과 청정 이웃 환경법(Clean Neighborhoods and Environment Act 2005)에 의해 개정된 소음법(Noise Act, 1996)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관련 행정당국의 실제 운용사례 및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여 영국의 이웃 간 소음 문제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II. 개정된 소음법(Noise Act, 1996)의 주요내용

한국의 소음관련법령 및 규약은 공동주택 관

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경범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민사소송(민법 제750조)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건축법을 개정하여 소음으로 야기되는 거주민간의 분쟁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음으로 야기되는 분쟁 그 자체에 관련된 법령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영국은 일찍이 19세기부터 소음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판례가 축적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사법적 행정법 규제를 실시해 왔으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이루어져 왔다.⁵⁾ 따라서 영국법령에는 한국에 비해 많은 소음관련 법령 및 규제가 존재한다(Appendix 1 참조).

위의 법령들 중,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소음법이다. 영국 정부는 이웃 간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Act 1990)⁶⁾과 법률이 정한 소란법(혹은 법정 불법방해법: Statutory Nuisance Act 1993)을 제정하여 전반적인 소음 문제를 규제하다가, 보다 효율적인 법률 집행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1996년에 소음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령을 통해 영국 정부

- 4) 2008년 2월 28일에 본 법 5항(Section 5)과 관련하여 소음측정과 측정기기에 대한 법령이 보충되었다. 참조: 「Directions Under Section 5 of the Noise Act 1996」.
- 5) 영국의 일반적인 소음규제법령에 관한 논문은 다음을 참조, 이은기, “영국의 소음규제 법제”, 「환경법 연구」 31권 3호, 2009.
- 6) 1990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 79항(Section 79)에서는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소란 혹은 소음을 조사할 것과 이 소란 혹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적절한 단계를 거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는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 간의 분쟁 조정 및 이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권한 및 처벌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영국의 소음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야간 소음(Night Noise)에 대한 엄격한 규제이다. 이는 영국이 이웃 간의 주간 소음은 어느 정도 일상 생활에서 수반되는 행위로 관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또한 야간 소음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집행을 통해 제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령 제1조(Section 1)에 본 법의 목적이 행정기관의 야간소음에 대처 (dealing with noise at night)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본 법령은 제2조(Section 2) 이하에서 야간소음 및 관할 행정기관의 소음 처리 담당자 (Environmental Health Officer)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 규정한 야간시간은 오후 11시(p.m.)부터 익일 오전 7시(a.m.)으로서(Section 2(6)), 이 시간 사이에, 소음을 유발한 이웃 (the offending dwelling)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할 행정기관(Local authority)의 담당자는 이에 대해 그 소음이 법적 허용치를 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담당자는 소음의 측정 장소 및

측정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Section 2(5)(a-b)).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반드시 소음을 측정할 필요는 없다.⁷⁾

본 법의 제3조(Section 3)는 소음을 유발한 이웃에 대한 소음 처리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규정이다. 담당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측정한 수치에 근거해서 소음을 유발한 이웃에게 경고 (warning notice)를 하며, 담당자는 소음 유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체적인 소음 수치 및 동시에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경고에 포함시켜야 한다(Section 3(1)(a-b)). 아울러 담당자는 소음 유발자에게 경고를 받는 10분 이내에 해당 소음이 종료될 것을 알려야 하며, 이 경고는 오전 7시(a.m.)이 시작되면서 종료된다(Section 3(2)(a-b)). 소음 유발자에게 경고할 때, 담당자는 경고문에 신고자(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밝힐 필요는 없다. 이는 소음 피해자에 대해 소음 유발자의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⁸⁾ 종종, 담당자가 해당 소음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담당자가 반드시 다시 소음발생 이웃을 방문하여 해당 소음을 판단하여야 한다.⁹⁾ 한편, 소음 유발에 책임이 있는 자(any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noise)로서 관련 담당자

7) Defra, The Noise Act 1996 as amended by 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and the Clean Neighbourhoods and Environment Act 2005: Guidance to Local Authorities in England(London: Defra, 2008), pp.7-8.

8) Ibid., p. 9.

9) Ibid., p. 8.

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거하여 소음 발생의 책임으로 유죄이며, Level 3¹⁰⁾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Section 4(1-3)).

소음법 제5조은 Defra의 장관의 최고 소음

및 허용된 소음 수치를 문서로 남기도록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소음 측정에 허가된 측정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다음의 표는 Encams에서 밝힌 소음의 수치이다.

〈표 1〉 소음 수치

데시벨(Decibels: dBA)	소음(Noise)	청역(Threshold of Hearing)
10	호흡, 나뭇잎 바스락 거리는 소리	
40	냉장고, 조용한 거실, 도서관	
70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알람시계	
85/90	차량 소음, 고함, 음식물 처리 기계	차 사고 소음은 85dBA 이상
110	축구 응원, 스테레오, 차 경적, 아기 울음, 액션 영화, 오케스트라	
130	압축 공기 드릴, 경주용 차 레이싱	
150	풍선 터지는 소리, 총 및 대포소리	

※ 출처: www.encams.org

일반적인 소음의 세기(Level)는 데시벨(dBA)로 측정되는데, 환경적인 소음도는 “A-weighted sound level” 데시벨에 의해서 표시된다.¹¹⁾ 일반적으로 사람의 청각이 고주파 스펙트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음법 제5조 3항(Section 5(3))에서 밝혔듯이, 같은 소음이라도 다른 환경에서 소음도의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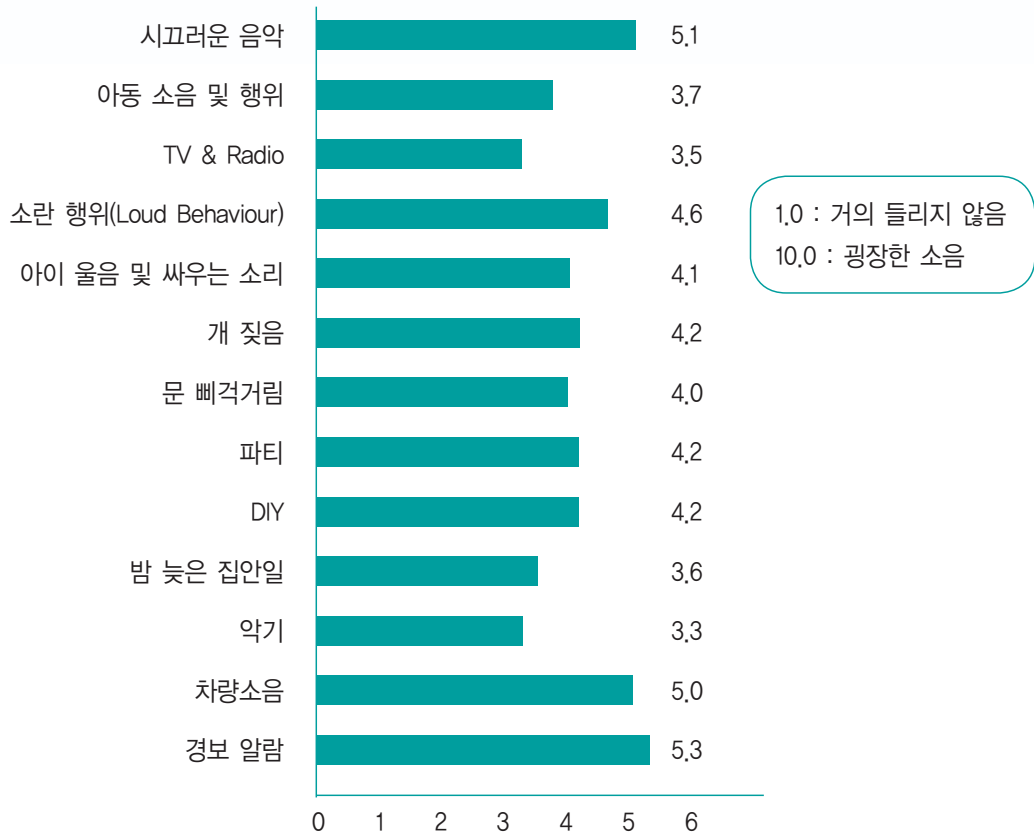
있다. 이를테면, 가정용 가전제품의 사용연한에 따라 소음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소음수치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균치를 표준 소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음의 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세기이다.

10) 구체적인 벌금에 관한 규정은 제8조(Section 8)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영국의 법정 벌금은 지역 별(잉글랜드/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벌금의 근간이 되는 법령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국은 표준 법정 벌금을 Level 1~5로 차등 분류하고 있으며, Level 3에 해당하는 벌금은 최고 1,000 파운드이다.

11) A-weight sound pressure level은 영국에서 정한 표준 기준(British Standard: BS) 7445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참고 BS 7445: Part I 1991/International Standard ISO 1996-1: 1982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oise. Part I. Guide to quantities and procedures.

〈표 2〉 소음 세기



※ 출처: Fiona Campbell, Neighbour Noise: Makers and Sufferers(Wigan: EmCams, 2007), p.12.

소음법 제6조의 주요 내용은 소음 측정 및 기기에 관한 것이며, 제7조은 제4조에서 규정한 소음의 증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증거로서 인정되는 소음은 어떤 기구에 의해 녹음된 것으로 (Section 7(1)(a)), 이 기구는 제6조에서 규정한 것이다(Section 7(1)(b)). 문서 역시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 Section 7(2)(a-b)에 의하면, Section 7(1)에 의거하여 소음이 기록될 문서에는 소음 측정기기의 종류(type) 및 소음 측정 담당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증거로 인정을 받게 된다. 아울

러 이 문서에는 소음 측정자의 서명 및 소음 발생지, 소음이 발생한 시간, 소음의 원인 및 종류를 기입해야 한다(Section 7(3)(a-b)).

제8조은 제4조에서 규정한 소음 유발자의 벌금에 관한 규정이다. 본 법은 소음을 발생시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벌금에 처해진다(Section 8(2)(a-b)). 아울러 본법은 2006년에 제정된 환경피해규제(The Environmental Offences Regulations)의 제2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벌금이 책정된다.¹²⁾ 소음법에 의해 규정되어 명시된 벌금(Fixed penalty) 고지서는 만드

12) 환경피해규제에서는 벌금의 범위를 75-110파운드로 규정했다; Defra, The Noise Act 1996 as amended by 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and the Clean Neighbourhoods and Environment Act 2005,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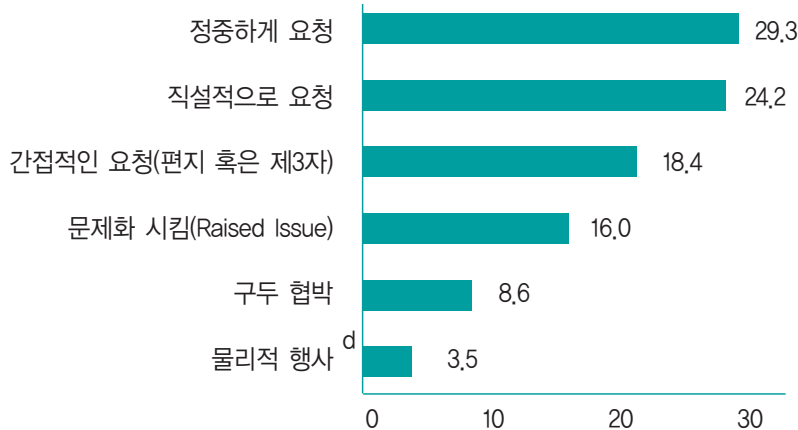
시 벌금 지급 시한, 벌금의 액수 및 벌금 지불자와 그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Section 8(5)(a-c), 일반적인 우편발송 방식을 통해 배달된다(Section 8(5)(d)). 제9조은 제8조의 벌금 관련 내용을 보충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제10조은 이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 정부 및 각종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III. 이웃 간 소음분쟁해결 방식

영국의 법령은 과도한 소음을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일종의 반사회행위(Anti-Social Behaviour)로 인식하고 있다. Appendix 1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다양한 법령에 소음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웃 간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관한 법령은

소음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주로 야간(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과시간의 이웃 간 소음은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파트와 같은 곳에는 층간 소음 및 음악 소리가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최근 지방정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Leeds시의 경우, 이미 이웃 간 소음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24시간 Hotline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담당자(Environmental Health Officer)에게 1시간 이내에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아직 영국 전역에 확대 실시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다음의 표는 현재 영국인이 이웃 간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표 3〉 소음문제 제기 방식



※ 출처: Campbell, Neighbour Noise: Makers and Sufferers, p. 16.

13) 참조 EnCams, NEIGHBOUR NOISE: a guide for the public, http://www.cieh.org/library/Knowledge/Environmental_protection/Noise/NoiseManagementGuideSeptember2006.pdf (2013년 8월 10일 접속).

강력 사건이 아닌 소음 문제로 항상 행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웃 간 소음문제를 위한 비행정적인 해결 방식을 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서 제안하고 있다.

1. 영국 정부가 권고한 소음분쟁해결 절차¹⁴⁾

- (1) 일단 이웃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이웃과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한다. 만약 직접적인 대화를 원치 않을 때에는 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제점을 공지한다. 소음 유발자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
- (2) 만약 소음을 유발한 이웃이 세입자일 경우에는 그 세입자의 집주인에게 항의할 수도 있다.
- (3) 이웃 간의 직접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분쟁해결 서비스(Mediation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는 관련 교육을 받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England와 Wales의 거주자는 각 지역의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홈페이지를, Scotland의 거주자는 Scottish Mediation Network를 이용한다. 약간의 분쟁 수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보다는 저렴하다. 한편 각 지역의 Council 혹은 Housing Association는 LawWork를 통해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4) 분쟁 조정 서비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정부(Local Authorities)나 Council를 이용하며, 이 때 지방정부의 담당자는 법률이 정한 소란 및 행위(statutory nuisance)의 규정위반을 조사한다. 이와 관련된 소란 및 행위에는 시끄러운 음악 및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소음, 인공적인 불빛, 먼지, 냄새, 담배, 매연, 가스 및 쓰레기를 쌓아두는 행위로서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만약 이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 피의자는 5,000파운드까지의 법정 벌금을 물어야 한다.
- (5) 만약 소음 분쟁으로 인해 폭력 혹은 위협이 발생하거나, 성별, 종교 혹은 인종적 배경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한다.

14) 본 절차에는 (4)와 (5)단계 사이에 정원의 옷자란 나무로 인한 분쟁에 관한 내용 및 절차가 담겨 있으나, 이 글에서는 삭제했다. 영국정부가 제안한 비공식 절차는 다음을 참조, Gov.UK, Resolving neighbour disputes, www.gov.uk/how-to-resolve-neighbour-disputes/take-action-through-the-courts (2013년 9월 10일 접속).



(6) 위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2. EnCams가 제안한 분쟁중재절차 (Case Study)

영국 정부가 제안한 소음분쟁 해결을 절차와 별도로 Encams은 Defra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 왔다. 소음 분쟁은 그 특성상 부차적인 문제 - 이를테면 폭력 - 가 유발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법정문제로 확대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EnCams은 비교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EnCams가 제시한 사례연구이다.

이웃의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가족이 문제해결을 위해 중재서비스를 신청했다.

일단 관련 담당부서에 문제가 접수된 후, 두 명의 중재자가 신고자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 신고자의 이웃은 싱글맘 가족으로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문제는 엄마가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아이들이 내는 소음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엄마가 내는 목소리도 이웃에게는 소음이었다.

중재자는 소음 문제를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후, 이웃의 싱글맘과 연락을 하고 신고자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싱글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큰 아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싱글맘은 이 문제로 퇴거요청에 뒤따르지 않을까로 불안해했다.

결국 양측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에 동의했다. 양자대면(face-to-face meeting)은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 양측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양측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도출해 이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을 했다.

비록 소음이 완전하게 제거되지는 않았음에도 양측은 이 문제 해결에 낙관적이 되었고, 분쟁은 종결되었다.¹⁵⁾

EnCams역시 중재만으로 이웃 간 소음 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행정적 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으므로, 앞서 밝힌 영국 정부의 권

고안과 같이 법률이 정한 소란 및 행위(statutory nuisance)의 규정위반을 조사하게 되며 소음 관련 증거를 채집한다.

15) EnCams, NEIGHBOUR NOISE: a guide for the public, pp. 5-6 요약.

3. 영국의 법률 적용 사례(Case Study)

영국 법원은 이웃으로 인한 소음이 소란 및 행위(statutory nuisance)를 반사회적 행위로 인

식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게 된다. 다음의 사례는 과도하게 층간소음을 유발한 거주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영국 법원의 판례이다.

버밍엄의 시영(市營) 주택의 임대자였던 샤론 매크글린에 대한 판결은 반사회행위법(Anti-Social Behaviour Act)의 엄격한 적용으로 거주지에서 퇴거당한 첫 사례이다.

밤낮으로 큰 음악을 들던 그녀의 집에서 내는 소음은 윗집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음은 물론이고, 바닥 떨어 및 심지어 가구까지 움직일 정도였다. 샤론은 2003년부터 이에 대한 주의를 받기 시작했으며, 시의 환경/보건 담당자(Environment Health Officers: EHOs)는 세 차례에 걸쳐 소음 유발 기구를 제거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때마다 새로운 기구로 다시 들여 놓았다.

2004년 6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법원은 샤론에게 고음질 음악기기와 텔레비전 소유를 금지했으나, 샤론은 이를 무시했다. 동년 8월, 법원은 14일 이내로 샤론의 거주지를 회수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 때, 지방 판사는(District Judge) 반사회행위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하여 피의자에게 앞으로 2년 동안 England 내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

위의 사례는 시의 환경/보건 담당자(Environment Health Officer)와 버밍엄시의 반사회행위 부서가 협력으로 집행되었는데, 반사회행위법의 적용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소음 측정을 포함한 행정 처리는 주로 EHOs가 담당하였다.¹⁶⁾

위의 경우는 관련 담당자 및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소음 유발자가 퇴거 명령을 받은 다소 극단적인 사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이웃 간 과도한 소음 문제를 반사회적 행위의 하나로 간주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 당국의 의지의 일환으로 보여주는 것 역시 사실이다.

VI. 닫는 글

영국 정부는 소음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해 오고 있으며, 수많은 법령에 소음 관련 법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법령 중 소음법은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령이다. 이웃 간 소

16) Defra, Neighbourhood Noise Policies and Practice for Local Authorities – a Management Guide (London: Defra, 2006), http://www.cieh.org/library/Knowledge/Environmental_protection/Noise/NoiseManagementGuideSeptember2006.pdf (2013년 9월 4일 접속), p. 45.



음문제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소음법은 이웃 간 소음 문제 해결이 바탕이 되는 법령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법의 적용 시간이 저녁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라는 점은, 이 법이 일과시간내의 소음문제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웃 간 소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Two-Track 방식을 사용한다. 우선 정부 및 환경단체 등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법령의 엄정한 집행 이전 이웃 간의 소음문제는 이웃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 정부에 담당자를 두어 이 문제를 중재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유연한 대처와는 별도로 영국 정부는 과도한 소음으로 유발자에게는 반사회행위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버밍엄시의 사론 맥로글린의 사례는 다소

극단적이지만, 법원이 소음 유발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소음 유발기구의 일정 기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영국 정부가 이웃 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의 이웃 간 소음 문제 역시 법령의 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및 아파트가 많은 한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영국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필요할 듯하다.

조 의 행

(영국 켄트대학교 박사과정)

참고문헌

이은기, “영국의 소음규제 법제”, 『환경법 연구』 31권 3호, 2009.

Defra, The Noise Act 1996 as amended by 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and the Clean Neighbourhoods and Environment Act 2005: Guidance to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London: Defra, 2008.

Defra, Neighbourhood Noise Policies and Practice for Local Authorities – a Management Guide, London: Defra, 2006. <http://www.cieh.org/library/Knowledge/>

[Environmental_protection/Noise/NoiseManagement-GuideSeptember2006.pdf](http://www.environmental-protection.gov.uk/Noise/NoiseManagement-GuideSeptember2006.pdf) (2013년 9월 4일 접속).

Fiona Campbell, Neighbour Noise: Makers and Sufferers, Wigan: EmCams, 2007.

EnCams, NEIGHBOUR NOISE: a guide for the public, http://www.cieh.org/library/Knowledge/Environmental_protection/Noise/NoiseManagement-GuideSeptember2006.pdf (2013년 8월 10일 접속)

Gov.UK, Resolving neighbour disputes, www.gov.uk/how-to-resolve-neighbour-disputes/take-action-through-the-courts (2013년 9월 10일 접속)

Appendix 1. 소음 및 소음 관련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 법령

- ▶ 반사회행위법(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 청정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관할 지방 정부(Local Authorities)의 권한에 관한 법령으로 담당 관할기관(Local Authorities)에게 소음이 야기되는 건물 및 부지 (premise), 광고 및 쓰레기를 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기존의 형사정책 및 공공질서법 (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의 개정법령이다.
- ▶ 청정 이웃 및 환경법(Clean Neighbourhoods and Environment Act 2005)
 - 지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법령으로 소음, 청소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청소 관리 및 계획, 인공조명 및 곤충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 ▶ 소음규제령(Control of Noise: Codes of Practice for Construction and Open Sites, England. Order 2002 SI 461 (잉글랜드에만 적용)
 - 지방정부는 4개의 영국 표준 기관 집행법규(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codes of practice)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소음 및 진동을 줄이도록 할 권한을 갖고 있다.
- ▶ 환경소음규제(Environmental Noise (England) Regulations 2006 SI 2238)
 - 지방정부는 소음 지도와 소음 유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소음 지도 (noise maps)을 지정하여야 한다. 소음 유발 지역의 예로서 인구 밀집 지역, 주요 도로, 철도 및 공항이 있다. 2009년 통합된 소음지도 (consolidated noise map)에 대한 지정이 추가되었으며, 관할 기관의 업무에 소음의 원인(noise sources) 외에 조용한 지역(quiet areas)역시 파악하도록 했다.
- ▶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정부의 청소, 오염된 토지 및 소음(소란)을 규제하도록 하는 기본 법령이다.
- ▶ 가정용 기기의 소음 규제(BIS Product Regulation Household Appliances (Noise Emission) Regulations 1990 SI 161)
 - 가정용 기기의 적정 소음 수치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광고 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994년 광고 금지에 관한 부분이 개정되었다.
- ▶ 소음 및 소란에 관한 법(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지방정부는 거리의 소음, 소음 유발자, 난동자 등에 의해 야기되는 소음을 관리해야 하며, 이



를 억제 및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기구를 사용한 실외 소음 관련 규제(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Regulations 2001 SI 1701)
 - 지방정부는 실외에서 허용 가능한 최고치의 소음수치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테면, 야외 공사 및 도로 수리 등에 야기되는 소음의 최고 허용치를 설정해야 한다. 2005년 소음 유발 기구의 한계 소음 수치를 변경했다(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Amendment) Regulations 2005 SI 3525).
- ▶ 도로 위 차량에 관한 규제(Road Vehicles (Construction and Use) (Amendment) Regulations 2010 SI 312)
 - 교통부 및 차량 등록처(Vehicle Certification Agency: VCA)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내용 중, 도로 보수 및 공사에 이용되는 특정 차량은 S표시 - 저소음 - 가 되어 있는 타이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게 한다.
- ▶ 지방정부의 소란 규제에 대한 항고(Local Authorities Statutory Nuisance (Appeals) Regulations 1995 SI 2644)
 - 지방정부의 소란 규제에 대하여 피의자가 항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여준다. 2006년 위의 내용 중, 특정 운동경기를 위한 적절한 인공조명 사용을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Amendment) Regulations 2005 SI 3525).
- ▶ 토지보상법과 소음처리 규제(The Land Compensation Act 1973 and the Noise Insulation Regulations 1975 and 1996)
 - 위의 두 법령에는 새롭게 건설된 도로 및 철도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상 대상에는 런던의 공항 (Heathrow, Gatwick 및 Stansted) 주변 지역을 포함한다.
- ▶ 공해관리법(The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담당 지방정부의 건설 및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리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령에는 거리에서의 소음 유발자(loudspeakers) 및 과도한 차량 음악(loud car stereos)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 ▶ **작업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 작업장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령이다. 소음과 관련하여 이 법령에서 작업장의 고용주는 근로자 및 그 주변에 건강에 이상을 줄 수 있는 소음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 ▶ **계획 및 강제수용법(The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의 지역 개발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과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법령에는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발생될 소음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 ▶ **공해 방지 및 관리법(The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 1999)**
 - 지방정부 및 환경부는 지역 공장 등에서 유출되는 소음을 포함한 반환경 물질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 ▶ **빌딩 규제(The Building Regulations 2010)**
 -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은 신설 빌딩의 건설 및 기존 빌딩의 보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것이다. 소음과 관련, Part E에 소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주류 판매 면허법(The Licensing Act 2003)**
 - 주류 판매 허가에 관련된 통합법령이다. 주요 내용은 주류 판매를 허가 받은 업소는 소음 유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류 판매 허가는 지방관할정부의 권한이지만, 경찰 역시 과도한 소음으로 문제가 야기될 경우 영업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 **꽃놀이법(The Fireworks Act 2003)**
 - 불꽃놀이로 인한 사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다. 저녁 11시(p.m.)부터 익일 7시(a.m.)까지의 불꽃놀이는 공식적으로 금지되나, 전통행사의 일환이거나 혹은 특별한 축제를 위한 불꽃놀이는 예외로 한다.
- ▶ **주거법(The Housing Act 2004)**
 - 이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정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29가지의 주변 소음의 사례를 규정하였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소음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